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지원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46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5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2202346)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202545)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4
3. 주요내용	5
III .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8
IV . 검토의견	9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9
2. 관계기관 의견	14
3. 법률 제정 필요성	22
4.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26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	26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 신설	30
(3)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	34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근거 신설	37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39
(6)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 ...	42
(7)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44

I. 송옥주의원 대표발의(2202346)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7. 29.

다. 회 부 일 : 2024. 7. 30.

2.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등의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

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I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202545)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5.

다. 회 부 일 : 2024. 8. 6.

2.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
시함(안 제22조).

Ⅲ.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 제정안과 관련된 제21대국회 발의 제정안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안, '22.7.) 및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의원안, '22.12.) 발의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의결
 -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4. 18.)
 -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2024. 5. 28.)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서 제출 (2024. 5. 29.)

<제21대국회 회의 경과>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 결과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8.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5. 11.	상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6. 22.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9. 20.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1. 16.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1. 22.	상정, 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2. 12.	상정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3. 12. 20.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2024. 1. 15.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2.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3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4. 18.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4. 5. 28.	상정, 심사, 의결(원안가결)

IV. 검토의견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 한우산업은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제로¹⁾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우농가가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1)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제정안별 구성 체계 】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우산업지원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2장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0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제11조(도축·출하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2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3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제14조(교육 지원)
제16조(교육 지원)	제15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6조(부산물의 활용)
제18조(부산물의 활용)	제17조(소비촉진)
제19조(소비촉진)	제18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19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0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1조(수출기반조성)
제23조(수출기반조성)	제22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장은 “한우”,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한우산업 발전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²⁾

제3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과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수출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송옥주의원안은 “한우의 자급률 확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4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

2)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화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은 제3장에서 규정

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과 유사내용의 ‘한우산업 지원법안’ 3건³⁾이 기제출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4.8.26.)되어 있는바, 제정안 심사 시 이를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의원안, 제2200779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 제2202003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안, 제2202164호)

【 5개 제정안별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지원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				시도지사 추진 실적 제출 의무 규정
한우산업 발전협의회	20명 이내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식품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21명 이내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고, 제3호.제4호에 따른 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우의 자급률 확보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방안 강구 의무 규정	-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방안 강구 의무 규정	-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영개선계획 포함 사항 규정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개요 및 기본계획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및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 우선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시	-	농식품부장관 승인 및 상생협력방안 마련 규정-		-	
한우품평회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한우품평회 개최 규정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축산법」 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이관	-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지원법」 제정보다는 「축산법」 체계 내에서(「축산법」 개정) 「한우지원법」에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임.⁴⁾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신설)⁵⁾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과제가 포함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근거 신설)⁶⁾

-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규모 관리 등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이와 관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안, 제2201921호)이 '24.7.18. 발의되었음.

5) (송옥주 의원안) 제5조, (윤준병 의원안) 제5조

6) (송옥주 의원안) 제9조, (윤준병 의원안) 제9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근거 신설)⁷⁾

-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7호 및 제10호 등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⁸⁾

-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미래 한우수급 전망을 분석·관리하는 한편,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5호 및 제11호,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2항 제3호 가목 등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근거 신설)⁹⁾

- 한우수급 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제1항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7) (송옥주 의원안) 제10조, (윤준병 의원안) 제22조

8) (송옥주 의원안) 제11조, (윤준병 의원안) 제10조

9) (송옥주 의원안) 제12조, (윤준병 의원안) 제11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신설)¹⁰⁾

□ 경영개선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비롯하여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음.

○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한우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12호에 동 조문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근거 신설)¹¹⁾

□ 소규모 한우에 대해 경영·기술·재무 등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12호에 동 조문의 내용과 그 취지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¹²⁾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경우 과도한 예산수반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송옥주 의원안) 제14조, (윤준병 의원안) 제13조

11) (송옥주 의원안) 제17조, (윤준병 의원안) 제15조

12) (송옥주 의원안) 제15조

- 다만, 소고기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기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소고기 자급률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축산법」 개정안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11호에 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의견임.

(2) 기획재정부

(도축·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¹³⁾

-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및 제47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료의 수급 지원 등의 용도로 축산발전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별도의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없음.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신설)¹⁴⁾

-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및 제47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료의 수급 지원 등의 용도로 축산발전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농가 경영 지원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별도의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없음.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¹⁵⁾

-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저 생산비 도입 시 한우 생산 증가 유인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 수급불안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과도한 재정소요 및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함.

13) (송옥주 의원안) 제12조, (윤준병 의원안) 제11조

14) (송옥주 의원안) 제14조, (윤준병 의원안) 제13조

15) (송옥주 의원안) 제15조

(3) 행정안전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¹⁶⁾

- ☐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¹⁷⁾

(4)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 한우 수급조절 정책 수립 및 관리 근거 신설)¹⁸⁾

- ☐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상품의 생산·출고를 제한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3호) 위반(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시 공정위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우의 수급조절 시에도 관련 협의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공정위와의 협의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송옥주 의원안) 제9조, (윤준병 의원안) 제9조

17) 「축산법」에 따라 설치된 유사위원회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축산발전시책 심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축산물수급조절,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등 심의)는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어 정비 추진 중

18) (송옥주 의원안) 제11조, (윤준병 의원안) 제10조

(5)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신설)¹⁹⁾

- 타축종과는 다른 토종유전자원으로서 한우와 관련하여 유전자 보호, 개량, 증식, 보전,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근거 신설)²⁰⁾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수급조절협회의 경우 위원회로서의 성격·기능이 자문의 기능만 있을 뿐이며, 축산인 대표만 참석할 수 있어 이해축종이 아닌 타축종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 역할이 부족함. 이에, 한우산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근거 신설)²¹⁾

- 농가의 자율적 정책 유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선택형 공익직불금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9) (송옥주 의원안) 제5조, (윤준병 의원안) 제5조

20) (송옥주 의원안) 제9조, (윤준병 의원안) 제9조

21) (송옥주 의원안) 제10조, (윤준병 의원안) 제22조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근거 신설)²²⁾

- ☐ 「축산법」에는 수급조절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어 농가들의 수급조절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한우법을 통해 수급조절을 위한 장려금 지급 및 요건·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²³⁾

- ☐ 한우의 경우 타축종과는 다른 세계유일무이한 토종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함. 또한,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가의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자급률만 높아질 수 있어, 최소 최저생산비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자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2) (송옥주 의원안) 제12조, (윤준병 의원안) 제11조

23) (송옥주 의원안) 제15조

3. 법률 제정 필요성

□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향후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소고기 수입관세율 현황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0	37.3	34.6	32.0	29.3	26.6	24.0	21.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8.6	16.0	13.0	10.6	8.0	5.3	2.6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 향후에도 CPTPP²⁴⁾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²⁵⁾,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²⁶⁾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2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체제

25)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26)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2.06.)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임.²⁷⁾

27) 이와 관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안, 제2201921호)이 '24.7.18. 발의되었음.

반면, 현행 법령 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우협회 등의 제정안 찬성 의견도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²⁸⁾도 존재하므로,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²⁹⁾

- 둘째, 축산 분야의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물 생산액】

구 분	생산액(단위 : 10억원)	비중(단위 : %)
돼지	9,650	48.5
한우	6,029	30.3
닭	2,581	13.0
오리	1,076	5.4
육우	305	1.5
염소	167	0.8
젖소	58	0.3
사슴	24	0.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2022년 가축 기준

2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제정), 「말산업 육성법」(2011. 3. 9. 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2. 4. 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7. 제정)

29)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요 농축산물과 비교 시 생산방식과 산물의 유통 및 가격결정 체계가 특수(낙농·양봉 등)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차·화훼·곤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 제시

축산 분야 가운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³⁰⁾

반면, FTA로 인한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높았으며,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³¹⁾되
어 있음.

이처럼,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주요 축산물 순수익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409	-1,276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689	-1,426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1,529	1,731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7.3	4.8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2.6	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여부, 다른 축
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실제로, 제21대국회에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안), 「한돈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31)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4.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한우의 유전자 보호를 위한 개량·증식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및 수급조절 방안	4.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그럼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한우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8. 한우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9.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10. 한우산업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1.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산업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2.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환 활성화 방안 8.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9.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기본방향의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3조³²⁾는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현행 「축산법」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우산업
발전만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
려한 것으로 보임.

32)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
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
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한우산업발전협회의 설치 근거 신설

□ 제정안은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윤준병의원안은 21명 이내)으로 구성된 한우산업발전 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1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제3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산업 또는 축산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7.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한우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한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4조³³⁾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축산법」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보다 협의회 구성원 및 심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한우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한우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한우수급 정책, 적정 사육두수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³⁴⁾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33)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4)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4(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않고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³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행정안전부 의견 제시

(3) 한우의 수급조절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자료를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우수급 등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을 한우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5년마다 한우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급에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어, 한우 가격이 타 축종에 비해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축산법」 제3조³⁶⁾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³⁷⁾에 따라 한

36)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

우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여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정 실익이 적다는 의견³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8)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근거 신설

- 제정안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가 한우의 출하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 적정한 한우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통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한우의 수급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축산법」 제3조³⁹⁾에서 축산물의 수급조정·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있으며,

「축산법」 제47조⁴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⁴¹⁾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통해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⁴²⁾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9)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0)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4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2)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의견 제시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근거 신설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	제13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한우농가에 한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한우생산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의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우 부문 순수익 현황 】⁴³⁾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409	-1,276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689	-1,426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1,529	1,731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7.3	4.8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2.6	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43)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마리당 소득(총 매출액에서 사육비를 제외한 금액)의 경우 번식우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다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비육우는 2010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 2023년에야 적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다만,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⁴⁴⁾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의 이미 지원되고 있고, ② 단순히 한우농가의 소득금액과 부채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③ 다른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⁴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45)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6)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근거 신설

- 송옥주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자급률⁴⁶⁾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제15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우’의 경우 타축종과는 다르게 전세계 유일무이한 토종자원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한우는 쌀과 더불어 농촌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므로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업 측면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산 소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한우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가의 경영 악화와는 무관하게 자급률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46) 한 나라의 전체 식량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

한우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경영적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경우 공급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안 및 과도한 예산 수반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⁴⁷⁾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생산비의 개념, 산출 과정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7)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7)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한우농가에 경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한우농가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소규모한우농가의 가축질병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 관리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 악화 및 질병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⁴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⁴⁹⁾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⁵⁰⁾에 따라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⁵¹⁾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문 의 처

02)6788-5426
